



정부 양대 노동 지침은 법적 효력 없고, 관련법을 부정하는 것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32조 3항)고 명시돼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겠는가?
-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도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조건 후퇴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침'으로 허용하겠다고...

▶ 벌써부터 삼성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등에서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2대 지침 철회, 노동개약 저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혈세 부정수급하고도 오리발 악덕업체 퇴출돼야



통신대기업 LG유플러스 원청으로부터 성북강북 도봉서비스센터, 성동광진서비스센터를 하청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누리온정보통신(대표이사 박종수)이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을 부정수급한 것이 재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근무 중인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중소기업 청년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지원금 2083만여원을 부정수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박종수 대표이사는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건을 폭로한 비정규직 현장기사들에게 일감 뺏기 등 보복

을 일삼았다.

우리 동네 통신 비정규직 현장기사들이 공익제보를 이유로 더 이상 보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정도경영을 기업이념으로 내건 통신대기업 LG유플러스가 이런 악덕업체에게 고객센터를 맡기고 있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도 시정의 의지가 없는 악덕업체는 퇴출돼야 한다.■

【 부정수급 관련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중 (주)000000통신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2014.9.12. 사실관계 조사결과 지원금 환수(20,835천원) 및 제재조치

○ (주)000000통신의 청년인턴십 지원금 부정수급

-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는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등과 2014.9.11. (주)000000통신 대표이사 000가 기존 근무직원을 신규채용으로 신청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매뉴얼의 참여기업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기존 직원채용)에 따라 2014.9.18. 청년인턴십 부정수금액 20,835천원 환수 및 지원 중단과 1년간 인턴신규채용금지 조치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와 절차를 거쳐 2014.10.16. 환수 및 서울시 고용지원사업 참여금지(2014.10.16.~2015.10.15.)조치함.

인턴명	구직등록	인턴채용일	기업 채용일	정규직 전환일	지원액(천원)
계					20,835
000	'13.8.29	'13.9.1	'13.7.4	'13.12.1	7,980
000	'13.9.6	'13.10.16	'13.3.19	'14.1.16	6,664
000	'13.10.10	'13.10.16	'13.9.4	'14.1.16	6,191

▲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중

꼭 알아야 할 노동권 상식 1

■ 최저임금 준수

▶ 2016년 시간급 6,030원

- ▷ 일급 48,240원 (8시간 기준)
- ▷ 월급 1,260,270원 (주40시간 기준)

1.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감사·단속직도 모두 적용. '수습'은 1년 이상 계약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것도 3개월 기간이 한도.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해야.
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노동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꼭 알아야 할 노동권 상식 3

■ 노동 관련 문제 발생 시

1. 구제 방법: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 등
2.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임금체불 관련 절차

- 1)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신고 가능
-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규모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토록 요구해야 함.
- 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지시

* 시정지시 거부 시 검찰 송치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받음

꼭 알아야 할 노동권 상식 2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해야 함.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2.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함.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실제 근로할 기간을 기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개시일만 기재. 만료일 기재 시 기간제 계약으로 오해 소지.

- **임금:**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각종수당, 상여금 등 꼼꼼이.

- **근로시간:** 청소년의 경우 야간근로 제한, 1일 7시간 적용.

- **근무일 및 휴일:** 정확한 근무요일 기재. 유급주휴일, 약정휴일 등 확인.

- **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필요.

▶ 1년 미만 근무 시 수습기간 적용 ×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법정수당 미만 시 법정 금액 적용. 결근, 손해 등을 이유로 한 패널티도 위법.

꼭 알아야 할 노동권 상식 4

“
여러분 곁에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가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설)
있습니다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을 시 여러분을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 노동조합 활동을 원하는 분들께도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블로그:** blog.daum.net/sbworkers

- **문의:** 신희철 010-8728-7418